

유명세의 대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의 유명인 사생활 보호 법안

노명훈 살베 레지나 대학교 범죄학과 교수

I. 들어가며

2025년 여름 현재 미국에서는 할리우드 영화감독과 주연 여배우 간의 법정공방으로 시끄럽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 ‘우리가 끝이야’(It Ends With Us) 촬영 중 주연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Blake Lively)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감독 겸 배우 저스틴 발도니(Justin Baldoni)가 자신을 향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라이블리와 남편 라이언 레이놀즈(Ryan Reynolds)를 상대로 명예훼손 맞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라이블리는 발도니가 촬영 중 라이블리를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했으며, 이 같은 성희롱 피해를 언론에 폭로하려 하자 라이블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언론과 인터넷에 흘려 오히려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도니와 그의 제작사는 라이블리와 라이언 레이놀즈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4억 달러 규모의 위자료료를 청구하는 별도 소송으로 맞섰다. 또한 뉴욕타임스가 라이블리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한 채 이를 검증 없이 보도해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뉴욕타임스를 상대로도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정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며 제기한 소송의 재판은 2026년 3월 열릴 예정이다.

오늘날 유명 연예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파파라치나 언론뿐만이 아니다. 현재 미국

인터넷 상에서는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웹사이트와 잡지가 있다.¹⁾ 유명인을 추적하고, 사진을 찍고, 그들의 동영상을 찍는 것은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산업이다.²⁾ 파파라치 사진작가는 인기 있는 유명인의 사진 한 장으로 수천만 원을 벌 수 있으며, TMZ.com과 같은 웹사이트는 할리우드 전역의 정보원들을 통해 유명인의 생활과 동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TMZ.com은 로스앤젤레스 지역 호텔, 공항, 지역 경찰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그들의 정보원들에게 유명인의 출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유명 연예인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주 의회에 출석해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파파라치의 신체적 침해로부터 자신과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13년, 제니퍼 가너(Jennifer Garner)와 할리 베리(Halle Berry)는 주 사생활 보호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 의회를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³⁾ 1998년부터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파파라치가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고,⁴⁾ 주 민법은 유명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드론 및 기타 첨단 사진 및 영상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사진을 판매한 파파라치와 이를 구매한 미디어 회사에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 글에서는 기술 사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생활 침해 행위에 초점을 맞춘 캘리포니아 주 민법 제1708.7조와 제1708.8조를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II. 유명인 사생활 침해에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일단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원은 1890년 새뮤얼 워런(Samuel Warren)과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가 하버드 로 리뷰(Harvard Law Review)에 기고한 글에서 개인정보보호권 확립을 촉구하면서 시작되었다.⁵⁾ 오늘날 파파라치에 대한 비판과 마찬가지로, 이 글

1) Schmidle, N. (2016, February 14). The Digital Dirt: How TMZ Gets the Videos and Photos that Celebrities Want to Hide. *The New Yorker*.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16/02/22/inside-harvey-levins-tmz>

2) Schmidle, N. (2013, February 22). 앞의 글.

3) Reuters (2019, January 10). California bill protecting children of celebrities from paparazzi signed into law. *Daily News*. <https://www.nydailynews.com/2013/09/25/california-bill-protecting-children-of-celebrities-from-paparazzi-signed-into-law/> 참조. 가너와 베리는 파파라치가 대중의 시선에 띄지 않는 자녀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증언했다. 베리는 딸이 파파라치의 끊임 없는 감시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진술했다.

4) California Civil Code §1708.8 (1998). 참조

5) Warren, S. D. & Brandeis, L. D. (1890).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4(5), p.193

에서 워런과 브랜다이스는 언론이 개인의 개인정보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을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사진과 신문산업은 개인 사생활과 가정생활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했다. 그리고 수많은 기계 장치들이 개인의 옷장 속에서 속삭일 수 있다는 예측을 현실로 만들 위험이 있다.”**⁶⁾ 워런과 브랜다이스 시대의 신문 가십 기사는 오늘날 유명한 중심의 TV 네트워크, 케이블 프로그램, 웹사이트, 트위터 포스팅, 페이스북 게시물과 같다.

워런과 브랜다이스가 기고한지 75년 후인 1960년, 개인 프라이버시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윌리엄 프로서(William Prosser)는 현대 프라이버시 침해 불법행위의 네 가지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개인의 신체적 고립 상태 침해, 금전적 이익을 위해 혹은 해를 끼치기 위해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권을 도용하는 행위, 사적인 사실의 공개, 그리고 대중 앞에 누군가를 허위로 드러내는 행위이다.⁷⁾ 캘리포니아 주 민법 제1708.7조와 제1708.8조는 이러한 불법행위 중 두 가지, 즉 고립 상태 침해와 사적인 사실의 공개에 초점을 맞춘다.

파파라치와 캘리포니아 주 민법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에 대한 대부분의 법률 논평은 2014년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주 민법 제1708.7조와 제1708.8조 개정안에 서명하기 전에 발표되었다. 2010년 크리스티나 로크(Christina Locke)는 1998년 이후 캘리포니아의 반파파라치법의 기원을 분석했다.⁸⁾ 그에 따르면, 제1708.8조의 이전 버전은 파파라치가 유명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해 고성능 카메라나 비디오 녹화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지적했다.⁹⁾ 2005년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제1708.8조를 확대하면서 파파라치가 유명인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판매될 경우 언론사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¹⁰⁾

로크는 이것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는데, 왜냐하면 대법원은 *Bartnicki vs. Vopper* 사건¹¹⁾에서 불법적으로 기록된 정보를 (제3자로서)언론사가 공개하는 것을 지지했기 때문이다.¹²⁾ 그녀는 대법원이 *Bartnicki* 판결에서 *Florida Star vs. B.J.F* 사건¹³⁾과 *Smith vs.*

6) Warren, S. D. & Brandeis, L. D. (1890). 앞의 글, p.195.

7) Prosser, W. L. (1960), Privacy, *California Law Review*, 48(3), p.383

8) Locke, C. M. (2010). Does Anti-Paparazzi Mean Anti-Press? First Amendment Implications of Privacy Legislation for the Newsroom, *Seton Hall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20(2), 227-247.

9) Locke, C. M. (2010). 앞의 글, p.237.

10) Locke, C. M. (2010). 앞의 글, p.240.

11) *Bartnicki v. Vopper*, 532 U.S. 514 (2001).

12) Locke, C. M. (2010). 앞의 글, supra note 17, p.241.

13) *Florida Star v. B.J.F.*, 491 U.S. 524 (1989). 플로리다 스타 vs. B.J.F 사건에서 대법원은 플로리다 스타 신문사가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신문사가 공개 파일에서 합법적으로 얻었으므로 해당 신문의 신원을 공개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Daily Mail 사건¹⁴⁾을 근거로 했으며, 이 두 사건은 언론사가 합법적으로 얻은 정보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더라도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재공개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¹⁵⁾

III. 운전 중 언론 활동 제한

2015년 *Raef vs. Superior County of Los Angeles*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차량법 제40008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파라치 사진작가 폴 레이프(Paul Raef)의 체포 사건을 재검토해야 했다. 레이프는 2012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던 유명인 저스틴 비버의 사진을 찍기 위해 무모하게 운전하여 법을 위반했다. 제40008조는 파파라치의 잠재적인 신체적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 민법 '제1708.7조 및 제1708.8조와 유사하다.¹⁶⁾ 이 법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의도로 무모하게 운전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주 민법 제1708.7조 및 제1708.8조에 관한 판례가 없으므로, 사진 및 영상물 촬영과 관련하여 언론의 법적 제한에 대한 유일한 주 판례는 바로 이 레이프 사건이다.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차량법 제40008조가 합헌이며 레이프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¹⁷⁾ 그는 상업적 목적으로 비버의 사진을 찍기 위해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운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¹⁸⁾ 레이프는 제40008조가 언론인으로서 자신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2012년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은 레이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지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 항소부는 2013년 판결을 뒤집고 그에게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노먼 엡스타인(Norman Epstein) 판사는 이 법이 파파라치를 포함한 특정 매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표면적으로 제40008조는 유명인을 쫓는 파파라치나 뉴스

14) *Smith v. Daily Mail Publishing Co.*, 443 U.S. 97 (1979). *Smith vs. Daily Mail* 출판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언론사가 증인에 대한 조사보도를 통해 미성년자의 이름을 얻었더라도 충격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5) Locke, C. M., (2010). 앞의 글, *supra* note 17, p.242.

16) CAL. VEH. CODE §40008 (2010). 상업적 목적으로 타인의 시각적 이미지, 녹음물 또는 기타 신체적 인상을 포착하려는 의도로 제21701조, 제21703조 또는 제23103조를 위반한 사람은 경범죄로 간주되며 최대 6개월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고 2,5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7) 240 Cal. App. 4th 1112 (2015).

18) *Ibid.*, p.1119.



를 취재하는 기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은 상업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미지, 소리 또는 신체적 인상을 촬영하려는 의도로 열거된 교통 위반을 저지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며,¹⁹⁾ 그는 이 법의 의도가 뉴스 취재 활동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 법은 상업적 또는 사적 용도로 이미지를 얻기 위해 교통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레이프는 기자가 특종 취재를 이유로 과속으로 대상에게 접근할 경우가 있는데 제 40008조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엡스타인 판사는 이 법이 무모하게 운전하면서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운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되었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캘리포니아 주 민법 제 1708.7조와 제1708.8조의 합헌성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제공하였다.

IV. 파파라치 활동에 불법 침입 행위 적용

2014년 9월 30일,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는 파파라치를 겨냥한 두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주 민법 제1708.7조와 제1708.8조를 개정하여 유명 연예인을 포함한 주민

¹⁹⁾ Ibid, p.1121.

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또한 파파라치 활동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안은 불법 침입(instrument tort)²⁰⁾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문제들을 포괄한다. 이 법은 타인의 이미지를 직접 촬영하거나 첨단영상기술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또한 불법 침입의 범위를 파파라치와 관련된 고용주와 직원 간의 사업 관계까지 확대한다.

이 법은 물리적 침해와 구성적 침해라는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물리적 침해는 “피고가 이미지 또는 녹화물을 캡처하려고 시도하면서 물리적 침해를 저지르는 경우”에 발생한다.²¹⁾ 구성적 침해는 직접 물리적 침입이 불가능하여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피고는 물리적 침해 없이 ‘시각적 또는 청각적 향상 장치’를 사용하여 해당 장치가 없었더라면 물리적 침해로만 얻을 수 있었던 이미지 또는 녹화물을 캡처함으로써 이미지 또는 녹화물을 캡처한다.

침입 기반 사생활 침해 범죄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유지에서 “개인 또는 가족 활동”에 참여할 때 발생한다.²²⁾ 파파라치라도 드론을 포함한 어떠한 장치를 사용하여 사유지 상공에서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물리적 침입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장치를 사용하였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시한다.²³⁾ “표준(‘강화된 카메라 또는 마이크가 아닌’) 카메라나 마이크가 장착된 드론은 원격에서 사용되는 강화된 장치와 동일하거나 더 상세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²⁴⁾

제1708.8조는 “상업적 목적”을 근거로 이미지 수집 등을 위한 기술을 사용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5,000달러에서 50,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²⁵⁾ 상업적 목적은

20) CAL CIV CODE §1708.8 (2014).

21) CAL CIV CODE §1708.8 (l)(1) (2014).

22) CAL CIV CODE §1708.8 (1)(a) (2014). 법률에서는 “피고가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고의로 들어가거나 원고의 사생활을 물리적으로 침해하는 불법 침입을 저지르고 원고가 개인적 또는 가족적 활동에 참여하는 시각적 이미지, 사운드 녹음 또는 기타 신체적 인상을 포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 물리적 침해가 일반적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은 사생활의 물리적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23) CAL CIV CODE §1708.8 (1)(b) (2014). 드론의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법률은 “피고가 합리적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원고가 합리적으로 사생활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 또는 가족 활동에 참여하는 원고의 시각적 이미지, 사운드 녹음 또는 기타 신체적 인상을 어떠한 장치를 사용하여 포착하려고 시도할 때, 해당 장치가 물리적 침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는 침해 없이 이러한 이미지, 사운드 녹음 또는 기타 신체적 인상을 얻을 수 없었을 경우, 해당 개인은 사생활의 구성적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추론한다.

24) AB 2306 CHAU Concurrence in Senate Amendments, 2014 Leg. Sess. (CA 2014).

25) CAL CIV CODE §1708.8 (1)(d) (2014).

“판매, 금전적 이득 또는 기타 대가를 기대하고 행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된다.²⁶⁾ 상업적 목적에는 “다른 사람이 법을 위반하도록 지시, 권유, 실제로 유도 또는 실제로 유발하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다.²⁷⁾ 파파라치 구성원이 미디어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거나 프리랜서로 고용된 경우, 해당 회사는 계약직 직원이 수행한 행위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지게 된다.

V. 파파라치 활동 제한을 위한 반괴롭힘법 활용

브라운 주지사가 2014년에 서명한 두 번째 법은 제1356호 법안, 제1708.7조이다. 이 법안은 제1708.8조만큼 세부적인 조항이 많지 않으나, 제1708.7조은 표면적으로는 피해자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지만, 파파라치 활동을 제한하고 해당 직업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스토킹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제1708.7조은 파파라치가 흔히 그러하듯 피해자를 거의 항상 감시하는 모든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았다.²⁸⁾ 피해자는 자신이 미행, 괴롭힘 또는 감시를 당했고,²⁹⁾ 개인 또는 가족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았으며,³⁰⁾ 정서적 고통을 겪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피고는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안전에 대한 무시와 같은 언어적 또는 행동을 통해 “상당한 위협”을 할 경우 죄가 성립한다.³¹⁾ “상당한 위협”은 다음을 통한 구두, 서면 또는 행동 패턴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어떤 행위, 방법, 장치 또는 수단에 의해서 원고의 재산을 추적, 괴롭힘, 감시, 위협, 방해, 손상하는 행위, 방법, 장치 또는 수단을 포함한다. 또한, 해당 위협을 수행하는 의도와 명백한 능력을 가지고 이루어진 구두,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전달된 진술 및 행위의 조합으로, 위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자신의 안전 또는 직계 가족의 안전에 대해 두려워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³²⁾

파파라치의 행동에는 유명 연예인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유명

²⁶⁾ CAL CIV CODE §1708.8 (7)(k) (2014).

²⁷⁾ FCAL CIV CODE §1708.8 (1)(e) (2014).

²⁸⁾ California Legislative Counsel's Digest AB 1356 (2014).

²⁹⁾ CAL CIV CODE §1708.7 (1) (2014).

³⁰⁾ CAL CIV CODE §1708.7 (2) (A) - (B) (2014).

³¹⁾ CAL CIV CODE §1708.7 (3)(A) (2014). 피고는 (i) 원고에게 자신 또는 직계 가족의 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의도, 또는 (ii) 원고 또는 직계 가족의 안전을 무모하게 무시하는 신빙성 있는 위협을 가했다. 또한, 원고는 적어도 한 번 이상 피고에게 피고의 행동 양식을 중단하고 완화할 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요구했어야 하며, 긴급 상황으로 인해 원고의 요구 전달이 불가능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는 자신의 행동 양식을 고수해야 한다.

³²⁾ CAL CIV CODE §1708.7 (3)(B)(2) (2014).

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괴롭힘으로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파파라치가 멀리서라도 대상의 움직임을 ‘보도’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전자 통신을 이용한 스톡킹을 금지하는 이 법에는 파파라치가 자주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비디오 카메라가 포함되는데,³³⁾ TMZ.com과 같은 유명 연예인 중심 미디어 운영자들은 대중의 시선에 노출된 유명인의 삶을 감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TMZ.com 설립자 하비 레빈(Harvey Levin)은 유명인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보도가치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³⁴⁾

VI. 나오며

언론에 제한을 가하려는 모든 시도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부담을 가하는데,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법은 대법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주지사가 유명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법적 접근 방식은 파파라치에게 시간, 장소, 방식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일 수 있다. 이는 타라 새틀러가 제안한 대중을 위한 “안전지대”와 유사하다.³⁵⁾ 그녀는 유명인을 포함한 누구나 물리적인 방해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와 같은 공공 접근 구역 내 물리적 공간을 보장받기 원했다. 이 “안전지대”는 3~6미터 또는 다른 측정 가능한 공간일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민법이 추구하는 것처럼 사생활 보호 구역을 보장할 수도 있다. 개인 및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시작은 될 수 있다.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호소하는 괴롭힘 문제를 안전지대가 해결해 주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신체적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주며, 이는 그들의 자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미성년자이자 사생활을 중시하는 아이들은 잘 알려진 유명 연예인 부모보다 더 큰 사생활 보장을 받게 될 수도 있다. 🌱

³³⁾ CAL CIV CODE §1708.7 (3)(B)(3) (2014). 전자 통신 장치에는 전화기, 휴대전화, 컴퓨터, 비디오 녹화기, 팩스, 호출기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³⁴⁾ Schmidle, N. (2013, February 22). 앞의 글.

³⁵⁾ Sattler, T. (2010). Plagued by the paparazzi: How California should sharpen the focus on its not-so picture-perfect *paparazzi* laws. *Southwestern Law Review*, 40(3), p.403